

朝鮮後期 正祖代 『大典通編』 「兵典」 편찬의 성격*

金伯哲**

1. 머리말
2. 정조년간 戎政의 이해방향
3. 『大典通編』 「兵典」의 탄생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후기에는 약 백여 년간에 걸쳐 법제정비사업이 비약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숙종·영조·정조 3왕을 거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정조년간에는 조선의 國制인 『경국대전』과 『속대전』 兩 大典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이 주요 현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大典通編』(정조9, 1785)의 편찬은 지난 1세기간의 법제정비과정을 종합적으로 마무리 짓는 사업이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조선의 국법체계 전반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해야 하는 대단히 정교한 작업이었다.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2008년 기초연구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KRF-2008-327-B00663).

** 전북대학교 인문한국 쌀·삶·문명연구원 HK 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왕 숙종과 영조가 각기 법제정비까지 걸린 세월과 비교하면 매우 신속한 행보였다.¹⁾ 집권한 지 불과 9년 만에 대전류 법제서의 완성을 보았다는 것은 법제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를 추진하는 힘도 아주 강력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변화된 흐름은 강력한 탕평군주로 명성이 드높았던 숙종이나 영조조차 감히 누리지 못했던 榮華였다. 어째서 유독 정조년간에만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일까?

아울러 『대전통편』에는 유독 六典 중 「兵典」의 비중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것은 이전 시기까지 일관되게 「刑典」을 중심으로 법제서들의 증보가 이루어진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현상이다. 이는 법제정비의 주안점이 어느 정도 이동한 것을 의미한다. 과연 王政에서 누가 1세기 이상 지속된 법제정비 사업의 滔滔한 흐름을 대담하게 바꿀 수 있었을까?

양자에는 정국운영을 주도하는 대변자가 설정되어야 가능했으며, 전통시대 왕정사회에서는 국왕 주도의 강력한 정책추진이 배경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정조시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²⁾ 정조대 법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진 바가 없었다. 특히 정조 초반은 국왕 정조의 집권기반이 취약했으며, 君主得義의 권력구도로 재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시각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정조 초반에 이루어진 법전편찬의 경과만을 놓고 볼 때, 이러한 평가는 실제 시대상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인다.

1) 숙종·영조대 초반부터 법제정비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실제 결과물이 산출된 것은 숙종 24년 『수교집록』, 숙종 33년 『전록통고』, 영조 22년 『속대전』 등으로 실행에 옮기기까지 상당한 세월이 소요되었다. 『대전통편』의 편찬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 참조. 염정섭, 「『대전통편』 해제」 『대전통편』 상,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김백철, 「조선후기 정조대 법제정비와 『대전통편』 체제의 구현」, 『대동문화연구』 6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2) 이태진, 『왕조의 유산-외규장각 도서를 찾아서-』, 지식산업사, 1994; 김성윤, 『조선후기 탕평정치 연구』, 지식산업사, 1997; 정옥자 외,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개, 1999; 유봉학, 『정조대왕의 꿈』, 신구문화사, 2001; 박현모, 『정치가 정조』, 푸른역사, 2001; 유봉학, 『개혁과 갈등의 시대-정조와 19세기-』, 신구문화사, 2009; 최성환, 「정조대 탕평정국의 군신의리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논문, 2009.

본고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정조 전반기 『대전통편』 「병전」 편찬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조년간 법제정비사와 18세기 戎政의 면면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어, 정조시대상에 대해 보다 정밀한 연구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정조년간 戎政의 이해방향

정조는 즉위 초반부터 선대왕의 능을 참배한다는 명분으로 行幸을 자주 나섰다. 그의 능행에 따른 각종 민정시찰의 기능이나 왕권강화 시도는 이미 수차례 지적되어 온 사안이다.³⁾ 군주가 선왕들의 능을 참배한다는 명분하에 도성 밖으로 나가서 직접 백성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민본정치를 실현하는 것은 그간 주요 업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래서 능행으로 지나가는 고을에는 은택을 내려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었다.⁴⁾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 가지 간과된 사실이 있다. 능행을 중히 여긴 만큼 준비과정에서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도 어김없이 강경한 처벌을 단행하였다. 갑옷을 착용하고는 절을 하지 말라는 하교를 어긴 장수에 대해서도 죄를 물었다.⁵⁾ 또 도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병조판서 洪樂性을 파직시키기도 하였으며, 令旗만을 보고 절차를 준수하여 확인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온 장수에 대해서 벌하기도 하였다.⁶⁾ 따라서 능행은 그

3) 이태진, 「변혁기의 제왕들 : 정조」, 『한국사시민강좌』 13, 1993; 한상권,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상언·격쟁 연구-』, 일조각, 1996; 김성윤, 『조선후기 탕평정치 연구』, 지식산업사, 1997;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1998;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행차에 대한 연구-의궤반차도와 거동기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논문, 2005.

4) 『正祖實錄』 卷2, 正祖即位年 8月 癸亥(24日).

5) 『正祖實錄』 卷3, 正祖 元年 正月 癸酉(6日).

6) 『正祖實錄』 卷3, 正祖 元年 2月 己酉(13日).

자체만으로도 국왕의 권위를 세우고 각 군영의 군사들을 친위세력으로 재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이용되었다. 능행은 사실상 군사훈련과 다름 없었다. 아울러 백성들에게 왕의 위엄과 은혜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이다.

정조는 즉위 초부터 발빠르게 군권을 장악해 나갔다. 즉위를 도왔던 徐命善에게 수어사와 총융사를 번갈아 맡겼으며, 정조 초반의 병권은 정조에게 충성하는 소수의 핵심 武班들이 장악하였다. 정조 2년(1778)에 선포된 '大誥'에서 이미 국가 전반의 운영방략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戎政의 개혁도 천명하였다. 이는 향후 전개된 국왕의 조치들이 '대고'의 밑그림 속에서 진행되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⁷⁾ 일종의 국왕의 정국운영 계획에 따른 수순처럼 보이기도 한다.

扈衛 三廳을 하나로 통합하고,⁸⁾ 불필요한 군영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守禦廳과 摠戎廳을 통합하는 兵制의 전면적인 재조정을 시도하였다.⁹⁾ 또 禁衛營·御營廳에서 「有薦騎士節目」을 올리게 했으며,¹⁰⁾ 각 軍門의 堂上·堂下와 장관, 從事官은 兵曹에서 낙점받게 했다.¹¹⁾ 게다가 都目政事 때 軍공을 세운 西北·松都의 사람을 쓰도록 했다.¹²⁾ 이러한 조치들은 병권이 분산되어 있던 것을 군영이 피폐해졌다는 이유를 들어 통합하면서 사실상

7) 『正祖實錄』 卷5, 正祖 2年 6月 壬辰(4日).

8) 『正祖實錄』 卷5, 正祖 2年 2月 丙申(5日).

9) 守禦廳과 摠戎廳의 통합논의는 정조 2년에 수차례 논의되었으나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였다. 정조 9년 비변사 주청에 따라 수어사와 총융사를 兼察하도록 제도화하였고, 정조 10년 검찰에 대한 재논의를 통해서 향후 수어사와 총융사는 검찰하는 『承政院日記』 기록이 다수 확인된다. 정조 16년 수어청에 준하여 총융청의 군영을 재조정하였다. 扈衛廳, 訓練都監, 御營廳, 禁衛營 등의 군사가 壯勇營에 점차 흡수되었고, 정조 19년 수어청 京廳이 혁파되어 前營의 이름을 잃었으며, 총융청도 單營으로 재편되어 後營의 명칭을 잃었으므로 사실상 5군영체제가 3군영체제로 전환되었다고 평가되었다. 『正祖實錄』 卷5, 正祖 2年 閏6月 辛未(13日); 『正祖實錄』 卷20, 正祖 9年 12月 辛丑(26日); 『正祖實錄』 卷21, 正祖 10年 4月 乙酉(12日); 『正祖實錄』 卷36, 正祖 16年 12月 己卯(15日); 『承政院日記』, 乾隆 60年(정조19) 2월 10일(임술);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 273~282쪽.

10) 『正祖實錄』 卷5, 正祖 2年 6月 庚戌(22日).

11) 『正祖實錄』 卷5, 正祖 2年 閏6月 乙亥(17日).

12) 『正祖實錄』 卷6, 正祖 2年 7月 戊子(1日).

국왕의 직접적인 통제권하에 두게 하고 소외받던 계층을 포섭하여 국왕의 근위세력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 洗馬臺에서 5군영의 장수와 군사를 犒饋하였는데, 이때 국왕은 戎服을 착용하였으며, 각영의 군사들과 禁軍이 차례로 깃발을 세우고 국왕의 통솔을 받았다.¹³⁾ 砲가 울려퍼지고, 軍號에 따라 장엄한 의식이 진행되었다. 병사들마다 한 상씩을 차려서 호궤를 마치고서 수어청과 총융청 군사에게 陳을 치게 하고 禁軍으로 하여금 은밀히 시험해 보게 하였다. 이때 禁軍의 활약으로 守禦廳과 摠戎廳은 대패하였다. 이는 이미 兩營의 폐지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한 해의 결과로서 다시금 兩營의 무용론을 확산시키는 계기이자 국왕의 친위군의 위세를 떨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¹⁴⁾ 9월에 또다시 노량에서 大閱을 행하고, 軍門의 기예명칭을 통일하는 등 군체제의 일원화를 꾀하였다.¹⁵⁾

정조 3년(1779) 南漢山城의 보축공사를 마무리하였다.¹⁶⁾ 이를 계기로 남한산성의 관할권을 守禦使에서 병조로 이관시켰다.¹⁷⁾ 이는 향후 留守府의 설치로 군주 직할로 두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¹⁸⁾ 일련의 武備논의의 도

13) 『正祖實錄』 卷6, 正祖 2年 9月 己丑(3日).

14) 『正祖實錄』 卷5, 正祖 2年 2月 丙申(5日).

15) 『正祖實錄』 卷6, 正祖 2年 9月 癸巳(7日).

16) 『正祖實錄』 卷7, 正祖 3年 6月 庚午(18日).

17) 『正祖實錄』 卷8, 正祖 3年 8月 甲寅(3日).

18) 정조년간 四留守府體制는 『大典通編』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나 정조 중반에 일어난 변화 중에는 漢城府, 開城府, 江華府(인조5) 외에 水原府(정조17), 廣州府(정조19) 등을 추가로 留守府로 승격시켰다. 이것은 王畿[京畿道]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5府를 배치한 형국이었다. 이는 王京을 정점으로 체제를 개편하는 의미가 있었다. 또한 각기 개성의 管理營, 강화의 鎭撫營, 광주의 守禦廳, 수원의 壯勇營 등이 설치되어 수도방어를 일임하는 군사거점으로서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이러한 방어체제의 개편과 정에서 국왕은 군제개혁을 주도하면서 기존의 5군영 체제를 조정하여 국왕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는 兵曹 휘하로 군을 재편하고 있어 주목된다.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漢城府: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開城府: 『續大典』 「吏典」 京官職, 江華府: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水原府, 正祖朝 癸丑: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廣州府, 正祖朝 乙卯: 『仁祖實錄』 卷16, 仁祖 5年 4月 戊戌(2日); 『正祖實錄』 卷37, 正祖 17年 正月 庚戌(16日); 『正祖實錄』 卷43, 正祖 19年 8月 丙申(18日); 김문식, 『조선후기 경학사상연구』, 일조각, 1996, 2~3쪽; 배우성, 「정조의 유수부 경영과 화성인식」, 『한국사연구』 127, 2004, 245~256쪽.

화선이 된 것은 바로 이 해에 전격적으로 단행된 능행이었다.¹⁹⁾ 특히, 이러한 국왕의 위세는 그대로 이어져 같은 해 전격적으로 단행된 7박 8일의 寧陵 및 英陵 행차는 사실상 남한산성을 시찰하기 위한 기획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남한산성의 시찰과 정비에 보냈다.²⁰⁾ 이는 향후 華城경영과 행차의 전범으로서 받아들여졌다.²¹⁾ 남한산성 방문으로 향후 방어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과 留守府 체제의 확립 등이 이어지게 되었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현지조사의 성격이 강한 행차였다. 이러한 정조의 行幸은 국왕이 경기도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수행하는 일련의 친위부대의 훈련상태를 점검하고 실제 수도방어의 전초기지가 될 남한산성을 점검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이미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국왕 정조의 권위는 일정 궤도에 올라와 있었다.

여기서 정조는 그동안 文治에만 너무 치우쳐서 武備에 힘쓰지 못하여 왔으며,²²⁾ 남한산성이 天險의 요새이기는 하지만 武備가 닳아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²³⁾ 국왕의 이러한 인식은 신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大司憲 李在協은 인재의 등용을 논하면서, “武備가 완비되지 않은 데 이르러서는 거의 文教가 진작되지 않은 것보다 더 극심하니, 弓馬에 능숙한 신하를 가려서 선발하여 干城의 쓰임에 대비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²⁴⁾ 左副承旨 金夏材도 軍政을 周公의 西周 이상사회의 한 측면으로 설명하면서, 武備에 힘쓰고 적절한 인재를 武臣으로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武備를 실현시키는 방안을 모두 인재등용책의 재조정으로서 가능하다고 보았다.²⁵⁾

19) 본고에서 ‘武備’ 개념은 實錄의 용례를 따라 총체적인 戎政의 일환으로 보았다. 『正祖實錄』 卷8, 正祖 3年 8月 甲寅(3日); 『正祖實錄』 卷8, 正祖 3年 8月 戊午(7日); 『正祖實錄』 卷8, 正祖 3年 11月 丁未(27日); 『正祖實錄』 卷8, 正祖 5年 10月 庚寅(21日) 등 참조.

20) 김문식, 「1779년 정조 능행과 남한산성」, 『한국실학연구』 8, 2004, 124~134쪽.

21) 기실 정조 19년(1795) 혜경궁의 華甲을 기념하기 위해 화성으로 행차한 7박 8일의 행사의 前兆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국왕이 1주일 이상 도성 밖에서 장기간 머문 경우는 정조 3년과 19년의 두 차례에 불과하다.

22) 『正祖實錄』 卷8, 正祖 3年 8月 甲寅(3日).

23) 『正祖實錄』 卷8, 正祖 3年 8月 戊午(7日).

24) 『正祖實錄』 卷12, 正祖 5年 10月 庚寅(21日).

25) 『正祖實錄』 卷8, 正祖 3年 11月 丁未(27日).

또한 국왕 역시 인재등용책의 문제에서 특히 서북지역에 주목하였다. 서북은 변방으로서 武人의 인재양성에 중요한 기반이었으나, 文風이 서북지역까지 파고들어 더 이상 武才를 닦으려고 하지 않고 서당만 늘어나고 있다고 한탄하였을 정도였다. 이 때문에 오히려 戎政은 날로 어려워져 변방방어마저 위협을 받게 되었다고 파악하였다.²⁶⁾

이 모두가 조정에서 武臣들이 제대로 출세를 할 수가 없고, 그 때문에 무인이 가장 많이 배출되던 서북지역 인사의 출사도 어렵게 되어 武備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그 대책으로 무신의 선발방법을 다시금 논의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무신들의 등용에 대해서 자세히 방법을 강구하도록 병조에 지시하기도 하였다.²⁷⁾

司諫 李福徽는 태평한 지가 오래되어 武備가 허술해져 筒筒와 弓矢의 부류들이 단지 화려한 장식으로 취해지며 실효가 없으니 옛 제도를 따라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하였다.²⁸⁾ 이제 비단 인재선발방법에 치중되지 않고 병장기에 대한 정비까지도 주장한 것이다. 같은 해 실제로 思悼世子の 존호를 莊獻世子로 바꾼 것을 기념하는 慶科를 설행하여 武臣 2천여 명을 선발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壯勇衛에 편입시키기에 이른다.²⁹⁾

北漢山城 按察御史 申耆도 軍器를 검열할 때 砲具의 쏘는 規式과 火藥과 彈丸의 무게를 軍校들에게 두루 물었으나 모두 자세히 대답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武備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인력의 확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³⁰⁾ 이러한 武備에 대한 다양한 인식들은 당시의 상소에서 흔히 나타나는 소재였다. 持平 白師謹은 ㉠ 文德을 펴고, ㉡ 武備를 정돈하며, ㉢ 紀綱을 세우고, ㉣ 賦稅를 고르게 하며, ㉤ 財用을 절약하라는 등 5가지를 상소로 올렸는데,³¹⁾ 여기서도 武備는 文風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26) 『正祖實錄』 卷12, 正祖 5年 11月 庚子(2日).

27) 『正祖實錄』 卷32, 正祖 15年 4月 癸亥(19日).

28) 『正祖實錄』 卷17, 正祖 8年 3月 壬子(27日).

29) 장용위는 정조 17년에 체제개편을 통해서 장용영으로 탈바꿈하였다. 아직 본격적인 제도는 『대전통편』에 수록되지 못하였다. 『正祖實錄』 卷18, 正祖 8年 9月 辛未(19日); 『正祖實錄』 卷37, 正祖 17年 正月 丙午(12日).

30) 『正祖實錄』 卷20, 正祖 9年 6月 甲午(17日).

31) 『正祖實錄』 卷20, 正祖 9年 7月 壬戌(15日).

사안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마치 문무의 한쌍을 이루는 것으로 어느 하나가 소홀히 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당대에 형성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정조년간 다양한 戎政에 대한 주장들은 당시 보편적인 시대인식을 반영하는 사례로 이해된다. 결국, 정조년간 武備인식은 신료들의 공론에 힘입어 강력한 용정을 추진할 수 있었고, 이를 국왕권의 강화로 귀결시킬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였다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생각된다.³²⁾ 이러한 국왕의 武備강화 노력들은 정조 9년(1785)에 편찬된 『대전통편』 「병전」을 통해서도 대체로 반영되었다. 이는 정조 당대의 戎政뿐 아니라, 그 근거를 先王들에게서 찾고자 하여 조선후기에 이루어진 다양한 정책들이 한데 집대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大典通編』 「兵典」의 탄생

(1) 「병전」의 구성방식

조선후기 법제편찬은 『경국대전』 이후 변화된 현행법들을 보다 상위의 국법체계 내로 편입시켜서 시행의 근거를 강화하는 데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경국대전』 이후의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수교집록』, 『신보수교집록』 등 각종 속록류들은 『속대전』이라는 하나의 법전으로 재탄생하였고,

32) 정조 13년(1789) 마침내 思悼世子의 첫 묘소인 永祐園의 遷園이 단행되었다. 이때 顯隆園 공역이 완공되는 것을 기념하여, 遷園에 동원된 군사들에게는 특별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別試射를 치르게 하였다. 아울러 수원 인근의 세 읍의 백성들에게는 은택을 베풀면서도 특별히 국왕이 머무는 동안 거처에 쓰일 필요한 물품들을 나른 군사들에게도 별도의 射放을 시행할 기회를 주었다. 이는 思悼世子의 伸冤과 戎政의 정비문제를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처리해나가고 있는 국왕의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壯勇營 外營의 설치와 華城경영으로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왕의 물리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당시 戎政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일정한 신료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正祖實錄』 卷28, 正祖 13年 10月 庚申(8日); 『正祖實錄』 卷28, 正祖 13年 10月 癸亥(11日).

이제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통합하는 것이 새로운 관건으로 대두했다. 정조년간 법제정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다. 17세기 이래 강화되어 온 「형전」 대신 「병전」이 주요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제도의 변화에서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가 병제의 개편이었다.³³⁾ 다양한 분야에 걸친 변화상이 18세기 법제정비사업에 반영되었지만, 외형적인 틀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아무래도 兵制였다.³⁴⁾ 그 변화상은 기실 뼈대를 이루는 부분들은 대개 영조대 국법체계 내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먼저 『신보수교집록』, 『증보전록통고』 등에 산입되었으며 『속대전』을 통해서 골격이 갖추어졌다. 5衛가 5軍營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新補受教輯錄』을 통해서 처음 수록되었고, 『속대전』에는 羽林衛將, 世孫衛從司, 訓練都監, 禁衛營, 御營廳, 守禦廳, 摠戎廳, 經理廳, 扈衛廳, 禁軍廳, 捕盜廳, 管理營, 鎮撫營, 別軍職廳, 內司僕寺, 能麼兒廳, 忠壯衛將, 忠翊衛將, 空闕衛將, 儀仗庫, 禁軍, 各營軍士, 騎步兵 등이 새롭게 편입되었다. 이렇듯 변화된 병제의 윤곽은 『속대전』을 통해서 대체로 반영되었다. 반면에 항목상 분류만으로 보면, 『대전통편』에서 새로운 반영 정도는 宣傳官廳, 守門將廳, 龍虎營(←禁軍廳),³⁵⁾ 四山參軍 등에 불과했다.

33) 조선후기 군제 변화상에 대해서는 다음 도서 참조. 차문섭, 『조선시대 군제연구』, 단국대출판부, 1973; 최효식, 『조선후기 군제사 연구』, 신서원, 1995; 차문섭, 『조선시대 군사관계 연구』, 단국대출판부, 1995; 서태원, 『조선후기 지방군제연구-영장제를 중심으로-』, 해안, 1999;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경인문화사, 2000; 김종수, 『조선후기 중앙군제연구-훈련도감의 설립과 사회변동-』, 해안, 2003.

34) 조선후기 五軍營制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오종록, 「조선후기 수도방위체제에 대한 일고찰-오군영의 삼수병제와 수성전」, 『사총』 33, 역사학연구회, 1988.

35) 친위군사의 재편은 영조대부터 주요 관심사였다. 영조는 禁軍의 치우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禁軍廳을 龍虎營으로 개칭하는 일대조치를 취하였다(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 247~261쪽).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영조 후반의 조치로서 『속대전』에 모두 반영되지 못하여 『대전통편』에 가서야 수록되었다. 한편 정조년간 壯勇營의 설치도 『대전통편』 편찬 후 이루어져 미처 「병전」에 수록되지 못하였다.

〈표 1〉 조선시대 중앙군제의 변화와 「兵典」 증보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
정1품	中樞府	中樞府	中樞府
정2품	五衛都摠府	五衛都摠府	五衛都摠府
정3품	五衛[義興衛, 龍驤衛, 虎賁衛, 忠佐衛[忠武衛], 兼司僕將[禁軍廳], 內禁衛將[禁軍廳], 訓練院	五衛[義興衛, 龍驤衛, 虎賁衛, 忠佐衛, 忠武衛], 兼司僕將[禁軍廳], 內禁衛將[禁軍廳], 羽林衛將[禁軍廳], 訓練院	五衛[義興衛, 龍驤衛, 虎賁衛, 忠佐衛, 忠武衛], 兼司僕將[禁軍廳], 內禁衛將[禁軍廳], 羽林衛將[禁軍廳], 訓練院, 宣傳官廳
정5품	世子翊衛司	世子翊衛司	世子翊衛司
중6품		世孫衛從司, [軍營衙門], 訓練都監, 禁衛營, 御營廳, 守禦廳, 摠戎廳, 經理廳, 扈衛廳, 禁軍廳, 捕盜廳, 管理營, 鎮撫營	世孫衛從司, 守門將廳, 軍營衙門, 訓練都監, 禁衛營, 御營廳, 守禦廳, 摠戎廳, 扈衛廳, 龍虎營(←禁軍廳), 捕盜廳, 管理營, 鎮撫營
散職		別軍職廳, 內司僕寺, 能麼兒廳, 忠壯衛將, 忠翊衛將, 空闕衛將, 儀仗庫	別軍職廳, 內司僕寺, 能麼兒廳, 忠壯衛將, 忠翊衛將, 空闕衛將, 儀仗庫
雜織	破陣軍, 隊卒, 彭排	禁軍, 各營軍士, 騎步兵	禁軍, 各營軍士, 騎步兵

* : 『속대전』의 宣惠廳과 『대전통편』의 濬川司는 본래 「吏典」이었으나, 『大典會通』에서 「兵典」으로 편입하였으므로 제외함.

** : 굵은 표시는 신설 衙門

어째서 「병전」의 비중이 정조대 편찬된 『대전통편』에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병제는 이미 영조대 편찬된 『속대전』에 나타났던 것일까? 여기에는 법전편찬의 상황과 목적이 다소 달랐기 때문이다. 법전편찬에는 일정 비율의 당대 현행법을 반영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전 시기 미처 국법체계 내에 편입되지 못한 선왕들의 법제도 수록해야 했다. 『속대전』의 반영법제는 성종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반면에, 『대전통편』의 기본적인 반영내용은 영조 후반부터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 각기 이전 시기들을 다루기도 한다. 그래서 전자는 조선후기의 변화상을 다루는 것이 주목적이며, 후자는 후기의 변화상을 다루지만 주로 정조 당대에 보완된 내용

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이는 국왕 정조의 의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전통편』에 반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대전통편』에 수록되는 다양한 법제들은 설령 선왕대의 내용들이라 할지라도 당대 정조의 의도대로 재해석되고 운문되어 수록되었다. 그래서 실제 운영상의 미시적인 부분은 정조년간에 집중적인 보완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정조대 법제정비는 처음 『수교집록』 속편의 기획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우선 『속대전』 이후의 누적된 수교를 집대성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었다.³⁶⁾ 그래서 영조 후반~정조 전반 새로이 만들어진 수교들은 차곡차곡 정리되어 大文 增字로 구분되었으며, 이전의 법제들을 개정하거나 보완한 내용들은 細註 增字로 표기되었다. 이때 증보된 문항은 500여 개에 달하였다.

〈표 2〉 『대전통편』 增補조항의 비율³⁷⁾

	吏典	戶典	禮典	兵典	刑典	工典
大文 增字	138	56	90	176	44	6
細註 增字	198	91	105	324	70	24
소 계	336	147	195	500	114	30

『대전통편』에서는 六典 중 단연 「兵典」의 증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숙종대 『수교집록』이나 영조대 『신보수교집록』에서 「刑典」이 각기 약 40% 이상 차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수치이다.³⁸⁾ 정조는 『대전통편』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새로 첨가하는 조항은 신중하지 않을 수 없으니 死律

36) 김백철, 「조선후기 정조대 법제정비와 『대전통편』 체제의 구현」, 『대동문화연구』 6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343쪽.

37) 實錄에서는 大文 增字에 대해서 吏典 212, 戶典 73, 禮典 101, 兵典 265, 刑典 60, 工典 12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제에서는 工典만 11로 보아 차이가 있으나, 현전하는 판본을 대조하여 大文은 6으로 보정하였음. 본표는 해제를 기반으로 재보정한 수치임. 『正祖實錄』 卷20, 正祖 9年 9月 丁巳(11日): 엄정섭, 「『대전통편』 해제」, 『대전통편』 상,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17쪽 “〈표 1〉 『대전통편』 각전 항목별 증보조문수” 참조.

38) 구덕희, 「『수교집록』 해제」, 『원문·역주 수교집록』, 청년사, 2001, 12쪽 “〈표 2〉 각전 수록 조항과 항목 수”; 구덕희·홍순민, 「『신보수교집록』 해제」, 『원문·역주 수교집록』, 청년사, 2000, 14쪽 “〈표 1〉 각전 수록 조항과 항목 수”.

에 관계되는 것은 하나도 넣지 않는다”고 하여 「형전」 증보가 중심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³⁹⁾ 그러면서 『대전통편』에서 「병전」이 가장 세밀하다고 自評하였기에 그 주안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자명하였다.⁴⁰⁾ 이는 정조년간 법제정비의 초점이 「병전」을 중심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이 「吏典」으로 제도적 수정이 요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 반면에 「刑典」은 증보율이 5위에 그치고 있어서 대체로 『속대전』에서 이미 확립한 寬刑主義를 보완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⁴¹⁾

〈표 3〉 속증~정조년간 법제서의 六典 구성비율⁴²⁾

	受教輯錄	新補受教輯錄	續大典	大典通編
吏典	115	204	242	138
戶典	161	229	122	56
禮典	130	145	198	90
兵典	181	176	256	176
刑典	402	611	282	44
工典	7	35	39	11

大文의 條文 數로는 『속대전』 「병전」이 256개, 『대전통편』 「병전」이 176개로 적지만, 『대전통편』 자체의 비중으로서는 「병전」이 압도적이다. 게다가 細註 324개까지 합산하게 되면 수정한 곳은 총 500개가 되므로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이다.

아울러 『대전통편』에서 구현되는 「이전」의 지방관제의 변화는 「병전」에서 확인되는 육군과 수군의 지휘권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진행되었다. 국초부터 八道の 관찰사가 행정·사법·군정의 三權을 장악하였는데, 18세기에 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정되었다. 행정장관으로서의 觀察使와 군통수권자로서의 兵馬使의 지위가 동시에 부여되었다.

39) 『國朝寶鑑』 卷71, 正祖朝 3, 9年 9月.

40) 『正祖實錄』 卷19, 正祖 9年 2月 癸卯(23日).

41)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대 『속대전』 위상의 재검토-「형전」 편찬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94, 2007.

42) 『속대전』과 『대전통편』은 大文을 기준으로 조문수를 처리함.

〈표 4〉 『大典通編』 「吏道典」의 행정장관 및 「兵典」의 八병제

外官職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황해	강원	함경	평안
觀察使(중2) 都事(중5)	1/1	1/1	1/1	1/1	1/1	1/1	1/1	1/1
府尹(중2)	1		1	1			1	2
大都護府使(정3)			2			1	1	1
牧使(정3)	3	4	3	4	2	1	1	2
都護府使(중3)	10	1	15	7	7	7	16	14
庶尹(중4)								1
郡守(중4)	9	12	12	11	7	6	2	12
判官(중5)		1	1	2	1	1	2	6
縣令(중5)	4	1	5	5	2	3	3	2
察訪(중6)	6	5	11	6	3	4	2	5
縣監(중6)	9	36	33	28	5	8		
訓導(중9)		50						
倭學訓導(중9)			1					
譯學訓導(중9)					3		1	6
譯學(중9)			2	6				
審樂(중9)		2	3	3	2	1	3	2
檢律(중9)	1	1	1	2	1	1	1	1
諸道各殿	崇義殿	太一殿	崇德殿					崇仁殿 崇靈殿
陸軍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황해	강원	함경	평안
兵馬節度使(중2)	1	2/1	3/2	2/1	2	1	3/2	2/1
虞侯(중3/정3) 評事(정6)							1	
防禦使(중2)	3					1	1	2
節制使(정3)	1		1	1				1
僉節制使(중3)	7	3	6	4	1	3	24	24
同僉節制使(중4)	18	13	25	17	18	11	7	25
萬戶(중4)	4				3		18	15
節制都尉(중6)	13	38	39	35	8	12	4	11
水軍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황해	강원	함경	평안
水軍統制使(중2)	1		1/1					
虞侯(정3)								
水軍統御使(중2)								
水軍節度使(정3)	1	2/1	3/2	3/2	2	1	3	1
虞侯(정4)								
防禦使(중2)	2			1				2
節制使(정3)				1				
僉節制使(중3)	3	3	4	4	1	1		5
同僉節制使(중4)	2		3	6	5			
萬戶(중4)	1	1	15	15	1	1	1	
巡營中軍(정3)	1	1	1	1	1	1	1	1
廣州中軍(정3)	1							
鎮營將(정3)	6	5	6	5	5	3	6	9
衛將(정3)							10	
監牧官(중6)	5	1	3	5	3		3	1
權官(중9)			2				15	14
別將(중9)	7		10	6	5		2	4

陸軍과 더불어 水軍도 아울러 정비되었다. 우선 임진왜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水軍統制使의 직위를 필두로 각기 수군통어사 및 수군절도사가 조정되었다. 특히 북방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반드시 병마사를 뽑을 때 水使를 경험한 인물을 뽑도록 하여 수군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게다가 수군의 兵船제도 역시 확연히 바뀌었다. 국초 『경국대전』에서는 大中小의 猛船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는데, 『속대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戰船, 防船, 兵船, 龜船, 海鶻船, 小猛船, 伺候船, 探船, 艍船, 給水船, 挾船, 別小船, 追捕船 등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각기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세분화된 것이다. 군체가 보다 세밀하게 정비되어, 병선의 제도는 이후 『대전통편』에서는 달리 수정되지 않았다.⁴³⁾

또한 정조년간 잦은 법제의 제정과정이 實錄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각 시기별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절목과 사목이 만들어졌다. 節目/事目에서도

43) <표 5> 조선시대 水軍 兵船 변화

	諸道兵船	경기	충청	경상	전라	강원	황해	함경	평안
經國大典	大猛船[80인]	16	11	20	22		7		4
	中猛船[60인]	20	34	66	43	14	12	2	15
	小猛船[30인]	14	24	105	33		10	12	4
	無軍大猛船								1
	無軍中猛船								3
	無軍小猛船	7	40	75	86	2	10	9	16
續大典	戰船	4	9	55	47		2		
	防船	10	21	2	11		26		6
	兵船	10	20	66	51		9		5
	龜船	1	1	9	3		5		
	海鶻船				1				
	小猛船						1		
	伺候船	16	41	143	101				12
	探船			2					
	艍船	3					21		1
	給水船	9					6		4
	挾船						17		1
	別小船						1		
	追捕船						23		

여전히 군제와 관련된 사안을 증보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⁴⁴⁾ 이는 『대전통편』 「병전」의 증보 빈도가 다른 어느 법제서보다 높은 것과는 관련이 있다. 정조년간 武備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기 때문에 실무규정이 절목/사목으로 정비되고, 이러한 당대의 분위기가 자연스레 법제정비 과정에서 大典에 반영된 것이다. 이는 大典의 편찬이 당시 법제정비의 흐름과 밀접한 연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기왕에 알려진 18세기 文治主義와 더불어 국왕과 위정자들의 武備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대전통편』 「병전」 중 제도의 개편은 정조년간 비교적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제도들이 대거 편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당대 戎政의 방향을 반영하였다. 『대전통편』 「병전」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武人 선발기준의 확대였다.⁴⁵⁾ 먼저, 庶孽·松都·西北출신자들을 등용하여 軍務를 익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였다. 이것은 소외되었던 계층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武備를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주로 군주를 중심으로 兵制를 재조정하는 형태로 구현되었다.

또한 '試取'에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인재선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경국대전』 이래의 제도가 기반이 되고 있지만, 실제 57개 종류의 시험 중 16개만이 국초에 만들어진 제도였다. 『속대전』에서 정비된 항목은 신설된 항목이 32개이고, 보완된 항목이 2개이다. 『대전통편』은 9개 항목이 신설되었고, 12개 항목에 걸쳐 수정되었으며, 기존의 6개 항목이 폐지[또는 조정]되었다. 대체로 영조년간 집중적인 변화가 보이고 이를 정조년간에 보완한 내용들이다.

44) 實錄을 기준으로 정조년간 확인되는 事目/節目은 52개에 달한다. 이 중 20개가 戎政에 관한 것으로 가장 비율이 높다. 김백철, 「朝鮮後期 正祖代 법제정비와 『大典通編』 체제의 구현」, 『대동문화연구』 6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369~370쪽, “〈표 7〉 정조년간 절목 및 사목류와 『대전통편』 산입정도” 참조.

45) 『大典通編』 「兵典」 試取.

〈표 6〉 『大典通編』 「兵典」 '試取'의 항목

번호	내용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	번호	내용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
1	武科式年 [初試/覆試/殿試]	○	○	○	30	吹螺赤	○		
2	都試	○	○		31	馬醫	○		
3	別試[初試/殿試]		○	○	32	宣傳官/武兼宣傳官/部將/守門將/禁軍/護衛軍官/忠翊衛		○	○
4	廷試[初試/殿試]		○		33	武藝砲手		○	
5	謁聖試[初試/殿試]		○		34	殺手		○	
6	重試[初試/殿試]		○		35	旗隊長		○	
7	權武科[殿試]			○	36	宿衛騎士		○	○
8	外方別科[初試(?)/殿試]		○	○	37	砲手		○	
9	觀武扠[初試/覆試/殿試]		○	○	38	文臣堂下官		○	
10	內禁衛	○		○ [폐지]	39	武臣堂上官		○	
11	宣薦內禁衛			○	40	武臣堂下官		○	
12	禁軍		○		41	專經殿講			○
13	別侍衛/親軍衛	○		○ [폐지] *	42	賓廳講		○	○
14	禁御兩營騎士			○	43	武經講		○	○
15	甲士	○		○ [폐지] *	44	能麼兒講		○	
16	都摠府堂下官/部將/宣傳官	○		○	45	各營將官		○	
17	內三廳出身		○	○	46	射講			○
18	內三廳南行		○		47	咸鏡道親騎衛		○	○
19	武藝	○		○ [폐지]	48	平安道別武士		○	
20	堂上軍官		○		49	黃海道別武士		○	○
21	哨官		○		50	江原道別武士		○	
22	敎鍊官		○		51	慶尙道別武士			○
23	破敵衛	○		○ [폐지]	52	江華壯義旅		○	
24	壯勇衛	○		○	53	統營武士		○	
25	捉虎甲士	○			54	東萊別騎衛		○	
26	正兵旅帥/隊正	○			55	南漢軍官			○
27	當番正兵鍊才	○			56	水原/坡州 別驍騎士			○
28	當番水軍鍊才	○			57	諸道馬兵			○
29	隊卒	○		○ [폐지]					

* 『大典通編』 「兵典」 試取에서는 “內禁衛”와 “別侍衛/親軍衛”는 『經國大典』의 조항이나 지금은 폐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대신해서 바로 다음 항목에서 “宣薦內禁衛”와 “禁御兩營騎士” 등으로 재설정하고 있다. 이는 제도상 변화를 나타내지만, 『대전통편』의 기재방식을 존중하여 폐지와 신설로 구분하였다.

또한 영조와 정조대의 인재선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군주가 직접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형태가 강화되었다. 別試, 廷試, 謁聖試, 重試, 外方別科, 觀武才 등이 영조대에 새롭게 정비된 武臣선발제도이며, 모두 군주가 殿試를 보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여기에 정조년간 앞서의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權務科를 만들어 바로 殿試만으로 등용될 수 있는 제도로 까지 확충시켰다.

둘째, 상당수의 職制가 대폭 당대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그래서 內禁衛는 宣薦內禁衛로 대신하였으며, 別侍衛나 親軍衛도 禁御兩營騎士 등으로 변화하였다. 여기서도 국왕의 친위군사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외에도 甲士, 武藝, 破敵衛, 隊卒 등의 직제들은 「병전」에는 폐지로 기재되면서, 『경국대전』의 6개 시험 항목이 재조정되기에 이르렀다.

셋째, 효종 이래 武備의 강조 분위기를 타고 현종대 본격화되었던 觀武才 및 신료들의 試射가 제도화되었다. 관무제는 조선전기부터 있었으나, 실제 활용사례는 현종~숙종대에 매우 높게 나타난다.⁴⁶⁾ 관무제는 보통 능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노량진 등에 들러서 능행을 수행했던 호위부대들의 사열을 받으며 모의전투 등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별도로 무과를 보아서 친위군 중에서 무신을 선발하는 제도였다. 그래서 국왕이 군의 사기를 진작하여 친위세력을 양성하는 목적이 매우 컸다. 정조의 壯勇營과 華城 武科시행 등도 이러한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

넷째, 전국 각 지역의 인재를 균등히 선발하도록 배려하였다. 영조년간에는 咸鏡道親騎衛·平安道別武士·黃海道別武士·江原道別武士·江華壯義旅·統營武士·東萊別騎衛 등 전국 각지의 요지에서 특별히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정조대에는 이를 계승하고 보완하여 慶尙道別武士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윤곽들을 토대로 변화된 戎政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6) 『中宗實錄』 卷6, 中宗 3年 5月 壬寅(5日); 『孝宗實錄』 卷9, 孝宗 3年 7月 壬午(13日); 『顯宗實錄』 卷8, 顯宗 5年 4月 癸卯(11日).

(2) 觀武才와 試射

「兵典」 '試取'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觀武才와 試射이다. 조선후기에는 국왕이 직접 주관하는 武人 선발과 文武班 재교육이 시행되었다. 하나는 觀武才로서 특별행사로 기획되어 능행길에 국왕이 직접 무인을 선발하는 형태로 갖추어졌고, 다른 하나는 文武臣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마다 국왕이 직접 주관하는 試射를 열어서 武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형태였다.

먼저 觀武才는 조선전기부터 시행되었으나 후기에 급격히 시행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⁴⁷⁾ 관무제는 신료들에 대한 간단한 활쏘기(觀射)에서부터 대규모 閱兵式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서 그 규모는 같은 왕대라도 設行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대체로 중종 후반부터는 일정한 형식에 의거하는 閱兵이 행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정례화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관무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였다.⁴⁸⁾ 특히 국왕에 의한 親試로서 활용된 측면이 강했으며, 능행을 빌미로 대규모 군사행동에 나섰다 환궁하는 길에 국왕이 직접 閱武에 참석하면서 왕을 수행한 군사들만을 대상으로 특별무과인 觀武才가 행해졌다. 이는 親衛軍士

47) <표 7> 觀武才 실행시기

연산군	중종	명종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연산군10	중종3	명종5	선조17	광해군2	인조3	효종3	현종3	숙종5[2회]	경종3	영조4	정조2
	중종10	명종8	선조27	광해군3?	인조6	효종4	현종5	숙종7	경종4	영조8	정조7
	중종17	명종12		광해군4	인조18	효종6?	현종6	숙종8		영조10	정조13
	중종20	명종14		광해군11		효종9	현종10	숙종20		영조20	
	중종23	명종18					현종14	숙종25		영조22	
	중종28							숙종26		영조27	
	중종30							숙종30		영조29	
	중종31							숙종33		영조35	
								숙종39			
								숙종45			
1	8	5	2	4	3	4	5	11	2	8	3

48) 관무제가 17세기 이래 보편화되었기에 『萬機要覽』에서는 각 군영별로 訓練都監과 禁軍廳(龍虎營)은 효종 3년에, 御營廳은 효종 10년에, 禁衛營은 숙종 12년에 최초 실시되었다고 상세히 기록하였다. 『萬機要覽』軍政編, 訓練都監, 試藝, 觀武才; 『萬機要覽』軍政編, 龍虎營, 試藝, 觀武才; 『萬機要覽』軍政編, 御營廳, 試藝, 觀武才; 『萬機要覽』軍政編, 禁衛營, 試藝, 觀武才.

의 우대 및 확보책이었다.⁴⁹⁾

숙종 20년(1694) 觀武才를 치를 때 扈衛廳 각 청의 付料軍官은 禁軍과 같이 한 가지 技藝를 시취하고 그 나머지 군관은 두 가지 기예로 시취하였다.⁵⁰⁾ 또한 영조 10년(1734)에는 관무재가 있으면 守禦廳과 摠戎廳 양청의 標下軍은 모두 北漢山城과 扈衛廳의 예에 따라 과거시험을 보게 하였으며, 扈衛廳은 三廳의 군사를 통틀어 각 100명을 정원으로 하였고, 관무재의 初試를 볼 때 활쏘기 한 가지로 시취하도록 하였다.⁵¹⁾ 이러한 觀武才에 관한 사항들은 『續大典』 「兵典」 '試取'에 반영되어 觀武才 初試와 覆試 규정으로 세분화되었다. 이러한 특별시험인 관무재는 정조대가 되면 시대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어 정례시험인 試射로 대체되는 경향이 확인된다.⁵²⁾

試射도 본래 조선전기부터 간헐적으로 국왕과 근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 후기에 가서야 정례화되었다. 관무재가 친위군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시험에 해당한다면, 시사는 기존관료에 대한 재교육에 가까웠다. 특히 文臣에게도 매월 試射에 참여할 것을 강제한 점이 흥미롭다.⁵³⁾ 試官은 六卿이 돌아가면서 맡았으며, 더욱이 하루에 쏘아야 할 연습량까지 10~15巡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엄히 다스렸다.⁵⁴⁾ 이러한 조치들은 대개 武臣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武臣에게는 더욱 강조하여 평상시에도 화살통을 차게 할 정도였다.⁵⁵⁾ 뿐만 아니라 騎芻도 요구되어 더욱 고난도 훈련이 필요했다.⁵⁶⁾ 武臣 堂上官의 試射는 매월 특정일로 정하고 사고

49) 『孝宗實錄』 卷9, 孝宗 3年 8月 壬寅(3日); 『顯宗實錄』 卷6, 顯宗 3年 10月 癸卯(3日).

50) 『新補受教輯錄』 「兵典」 試取, 康熙 甲戌(숙종20).

51) 『新補受教輯錄』 「兵典」 試取, 雍正 甲寅(영조10).

52) 실록을 기준으로 정조대 관무재는 3회 열린 반면에, 시사는 무려 257회나 개최되었다. 다만, 관무재가 능행시 주로 이루어지는 만큼, 조선 역대임금 중 최다 능행을 기록한 정조대에 관무재가 추가로 실시되었을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표 7〉 觀武才 設行시기” 및 “〈표 8〉 정조년간 試射 設行” 참조

53) 『受教輯錄』 「兵典」 試取, 崇禎 乙亥(인조13).

54) 『受教輯錄』 「兵典」 試取, 康熙 甲辰(현종5); 『受教輯錄』 「兵典」 試取, 康熙 壬寅(현종3); 『受教輯錄』 「兵典」 試取, 崇禎 甲戌(인조12).

55) 『受教輯錄』 「兵典」 試取, 康熙 丙午(현종7); 『受教輯錄』 「兵典」 試取, 順治 癸巳(효종4); 『受教輯錄』 「兵典」 試取, 順治 庚寅(효종1).

56) 『受教輯錄』 「兵典」 試取, 順治 庚寅(효종1); 『受教輯錄』 「兵典」 試取, 康熙 乙卯(숙종1).

가 있어도 그 달 안에 행하도록 하였다.⁵⁷⁾ 扈衛廳 軍官으로 中日試射⁵⁸⁾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허락하였다.⁵⁹⁾ 또 禁軍에 대해서도 더욱 세밀한 규정을 두어 정예군화를 꾀하였다.⁶⁰⁾

試射에 관한 내용들은 『속대전』에서 대강의 규식이 정리되었으며,⁶¹⁾ 정조년간에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되어 文武班 신료들에게 모두 정기적으로 試射를 하도록 하였다.⁶²⁾ 정조 원년(1777) 국왕은 慶熙宮 武德門(北門)에 나아가서는 三軍門(訓練都監·禁衛營·御營廳)의 大將을 소견하여 八壯士의 후손들을 시험보는 자리에서,⁶³⁾ 이곳이 “예전의 內試射를 하던 곳”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잊지 않기 위해 弓箭을 하사한다고 하였을 정도였다.⁶⁴⁾ 이미 즉위 초부터 內試射에 국왕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試射의 권위가 높아지고 있었다.⁶⁵⁾ 그래서 三廳(內乘·別軍職·宣

57) 『新補受教輯錄』 「兵典」 都試, 雍正 庚戌(영조6); 『新補受教輯錄』 「兵典」 都試, 乾隆 丁巳(영조13).

58) 中日試射는 子·午·卯·酉가 든 일자에 시사를 치르는 것을 이르는 것으로 연산군대부터 시행기록이 확인된다. 『燕山君日記』 卷19, 燕山君 2年 11月 甲寅(11日).

59) 『新補受教輯錄』 「兵典」 都試, 康熙 乙卯(숙종1).

60) 『受教輯錄』 「兵典」 試取, 順治 丁酉(효종8); 『受教輯錄』 「兵典」 試取, 康熙 甲辰(현종5); 『受教輯錄』 「兵典」 試取, 康熙 甲辰(현종5); 『新補受教輯錄』 「兵典」 都試 연대미상.

61) 『續大典』 「兵典」 試取, 文武堂下官; 『續大典』 「兵典」 試取, 文武堂上官.

62) <표 8> 정조년간 試射 실행(*실록 기준)

일자	비고	일자	비고	일자	비고	일자	비고
정조즉위년	2	정조7	19	정조14	21	정조21	14
정조1	9	정조8	9	정조15	11	정조22	6
정조2	9	정조9	16	정조16	18	정조23	9
정조3	9	정조10	13	정조17	10	정조24	2
정조4	3	정조11	14	정조18	10	총 257회	
정조5	6	정조12	4	정조19	10		
정조6	7	정조13	15	정조20	11		

63) 孝宗朝 八壯士는 병자호란으로 鳳林大君(효종)이 瀋陽에 잡혀갔을 때 호종한 朴培元·申晉翼·吳孝誠·趙壤·張愛聲·金志雄·張士敏·朴起星 등이다. 이들은 귀국하여 別軍職廳에 소속되었다. 영조대부터 이미 팔장사 후예를 불러 활쏘기를 시험한 기록이 확인된다. 『英祖實錄』 卷103, 英祖 40年 2月 庚寅(8日).

64) 『正祖實錄』 卷4, 正祖 元年 7月 辛巳(18日).

65) '內試射'란 명칭은 인조 10년부터 확인되며 보편적인 사례들은 숙종 27년 이후 다수 확인된다. 『만기요람』에서는 龍虎營(禁軍廳)에 '內試射'를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하여 “해마다 정월과 7월 1일에 별장이 宣傳官廳에 들어가서 一內禁軍의 궁술시험을 행할 것을 품의하

傳官)의 內試射를 中官(內侍)이 가서 감독하는 것을 폐지하고 반드시 임금이 親臨하여 치루도록 격상하기도 하였다.⁶⁶⁾

이 같은 조치는 더욱 확대되어 武臣의 講試에도 모두 임금이 직접 참관하도록 하였고, 이때 시험과목 중의 하나인 武射는 內試射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을 정도였다.⁶⁷⁾ 각 군영의 內試射도 반드시 宣傳官이 전교를 들고 지시하도록 하였고,⁶⁸⁾ 試射 규정을 정리하였다.⁶⁹⁾ 武臣堂上祿試射는 임금이 친히 임명하도록 조정하였다.⁷⁰⁾ 또 抄啓文臣의 試射도 별도로 규정하였을 정도였다.⁷¹⁾ 기타 宣傳官 등에 대한 시험 규정도 함께 고쳐졌다.⁷²⁾

정조대에는 대부분의 試射에 군주가 직접 臨御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되었다. 규식을 보완하는 문제에도 국왕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사마광의 문집을 참고해서 貫革의 규격을 고증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軍門의 試射에 관한 규식을 정비하도록 하였다.⁷³⁾ 5軍門에서는 당상관은 50세가 되면 射講이 면제되었고, 60세가 넘어야 비로소 활쏘기를 면하였으나 당하관은 면제대상이 되지 못하였다.⁷⁴⁾ 이후 화살의 종류 및 武臣堂上祿試射 규정도 신칙되었다.⁷⁵⁾ 試射의 범위도 광범위하였다. 무신당상관, 무신당하관, 문신당하관이 그 대상이 되었다. 사실상 문신당상관을 제외하면 모든 신료들은 試射에 응해야 했다. 국왕이 직접 試射에 나아가는 상황에서 신료들이 매월 시행하는 試射를 거르기는 어려웠다.

여 왕의 敎命으로 실시한다”고 하였고, 정조 10년에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承政院日記』, 崇禎 5年(인조10) 4月 3日(庚午): 『承政院日記』, 康熙 40年(숙종27) 4月 29日(丙戌): 『萬機要覽』軍政編, 龍虎營, 試藝, 內試射.

66) 『正祖實錄』卷4, 正祖 元年 9月 癸酉(11日).

67) 『正祖實錄』卷11, 正祖 5年 2月 辛酉(18日).

68) 『正祖實錄』卷22, 正祖 10年 12月 丙辰(17日).

69) 『正祖實錄』卷31, 正祖 14年 9月 辛巳(4日).

70) 『正祖實錄』卷29, 正祖 14年 3月 丙申(16日).

71) 『正祖實錄』卷20, 正祖 9年 7月 戊辰(21日).

72) 『正祖實錄』卷21, 正祖 10年 正月 丁卯(22日).

73) 『正祖實錄』卷3, 正祖 元年 2月 壬戌(26日); 『正祖實錄』卷31, 正祖 14年 9月 辛巳(4日).

74) 『大典通編』 「兵典」 試取, 射講.

75) 『正祖實錄』卷41, 正祖 18年 9月 庚寅(6日); 『正祖實錄』卷35, 正祖 16年 7月 壬寅(5日).

(3) 변화된 戎政의 성격

국왕의 이러한 인재선발과 교육에 대한 비상한 관심은 서북출신의 등용책으로도 연결되었다. 『대전통편』 「병전」에서 매우 특징적인 부분은 북방출신에 대한 적극적인 인재선발에 있다.⁷⁶⁾ 영조 21년(1745)의 受教를 반영하여 江邊七邑 出身者 중에서 매년 초에 관찰사가 3인을 추천하면 이를 임금에게 아뢰어 수석으로 추천된 사람은 都政 때 內三廳의 實職에 임용하고 그 밑의 두 사람은 금위청과 어영청의 哨官으로 나누어 임명하였다.⁷⁷⁾ 서북의 인재 중에서 무과 급제자들을 우선 선발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또한 각 營門에서 계속 근무하여 만 45개월이 된 후에 근무한 것을 보고하도록 하였는데,⁷⁸⁾ 註에서 일반 衙門들을 나열하는 것에 더하여 “義州騎撥”, “西北別付料軍官”, “平安兵營의 攔後士” 등이 별도로 부기되어 있다. 京畿監營이나 統禦營, 江華府가 아울러 나타나지만 윤번으로 산출하는 데 비해 유독 북방지역만은 별도로 기입하고 都目 때마다 1인씩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특혜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평안도에서는 특별히 천거할 사람을 매년 초에 시험으로 뽑아서 관찰사가 임금에게 장계로 보고하여 調用하도록 하였다.⁷⁹⁾ 이는 기존의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라는 차원 외에도, 전통적으로 무예에 뛰어난 인재를 배출해낸 북방지역 출신자들을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실력을 주요기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게 되었는데, 이는 奎章閣 등에서 檢書官으로 서열을 기용해 나간 정책과 부합된다. 특히, 명망있는 무반 집안이라도 잡기로 官階를 받은 경우 장수직에 임용할 수 없게 하였고, 임금이 친히 임하는 觀武才에서 뽑힐 경우에만 그 실력을 인정하였다.⁸⁰⁾

76) 英·正祖代 서북출신 우대책은 다음 책 참조. 오수창,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 일조각, 2002.

77) 『英祖實錄』 卷61, 英祖 21年 6月 戊午(17日): 『大典通編』 「兵典」 京官職.

78) 『大典通編』 「兵典」 京官職.

79) 『大典通編』 「兵典」 京官職.

80) 『大典通編』 「兵典」 京官職.

權武科를 두어 殿試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⁸¹⁾ 현종조 이래 부각된 觀武才를 영조대부터 적극 활용하여 이를 제도화하는 등 각종 무과시험 제도를 개혁하였다.⁸²⁾

영조대에는 武科급제자는 모두 서북 변방 고을에 가서 방어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변방의 중요성과 무신들에게 실전 경험을 쌓도록 의무화하였다.⁸³⁾ 오늘날 대체로 육사출신 장교에게 전방근무를 의무화하는 조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통해서 가장 힘든 지역에 가장 명예로운 무과출신자들이 가는 것으로 분위기를 쇠신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해당 조문의 바로 아래에 함경도 土兵에게는 貢賦와 雜役이 없고 오로지 국경을 지키는 일만 맡긴다고 하여,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이었던 서북방에 대해 우대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⁸⁴⁾ 그만큼 지키기 힘든 지역이기도 했지만, 그에 따른 정부의 세심한 배려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영조대의 분위기가 정조년간 계승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 밖에도 정조 14년(1790) 「漢旅新設節目」을 만들어 漢人(중국인) 자손에 대한 특별한 등용책도 아울러 제시하였다.⁸⁵⁾ 이는 모두 소외받는 계층을 적극적으로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고자 한 정책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조년간의 정책들은 “능력위주의 등용과 재교육체계”의 형성으로 귀결되었다. 그래서 실무교육을 중히 여기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명망있는 武班집안이라도 雜技로 관계를 받은 이는 將帥職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며,⁸⁶⁾ 실제 경험이 충분한 武臣을 장수로 등용하였다. 納粟帖으로 관계를 줄 경우에도 實職은 허용하지 않았다.⁸⁷⁾ 이 역시 무장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물에게 무반에 나아갈 수 없도록 규제한 것이다. 아울러 參上官 武

81) 『大典通編』 「兵典」 試取.

82) 『大典通編』 「兵典」 試取.

83) 『續大典』 「兵典」 留防.

84) 『續大典』 「兵典」 留防.

85) 『正祖實錄』 卷29, 正祖 14年 3月 己亥(19日).

86) 『大典通編』 「兵典」 京官職.

87) 『承政院日記』, 雍正 9年(영조7) 4月 11日(癸卯); 『新補受教輯錄』 「吏典」 雜令, 雍正 辛亥(영조7); 『大典通編』 「兵典」 京官職.

兼宣傳官, 守門將 등은 六品 實職을 거치지 않고는 바로 都事나 判官에 임용후보로 추천될 수 없게 하여, 정상적인 관료의 승진체계를 따르도록 하였다. 처음 벼슬할 때에는 과거출신과 閑良을 막론하고 禁軍이나 騎士를 거쳐서 근무월수를 채워야만 임용후보자로 추천되었으며, 營門에서 근무한 지 만 45개월이 지나야 邊將으로 추천하였다.⁸⁸⁾ 이 모두가 명목상의 장수가 등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고 실무를 충분히 익힌 武臣을 양성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또 서북 이외의 各道 兵使[兵馬節度使]는 水使[水軍節度使]를 거친 사람을 임용후보자로 하여 上申하고 南兵使[咸鏡南道 兵馬節度使]는 병사를 거친 적이 있는 사람을 上申하여 임명하도록 기본방침을 정하였다.⁸⁹⁾ 다만, 무과급제한 관료가 承旨를 거쳤으면 防禦使를 거치지 않았어도 병마절도사의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侍從臣[승지]에 대한 특혜조치가 확인된다. 이는 국왕의 친위세력 육성을 위한 포석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여러 道의 中軍은 모두 兵曹에서 임명하였는데,⁹⁰⁾ 이 역시 국왕의 병조관서를 통한 직접적인 지방 장악력을 높인 조치로 생각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왕 중심의 병제개편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도 영조년간부터 다양한 제도가 보장되었는데, 賓廳講이나 能磨兒講 역시 그러한 제도 중 하나였다. 전자는 50세 이하의 관원을 보고하면 임금이 10인을 지명하여 시험을 보게 하는 제도이며,⁹¹⁾ 후자는 매월 6차례 시험을 보아 분기별로 보고하는 형식이다. 이는 정조대 규장각 시험제도와도 연결될 뿐 아니라, 정조가 설치한 專經殿講에서 40세 이하를 뽑아서 별도로 시험을 보도록 하는 제도와의 맥락이다.⁹²⁾ 이러한 흐름은 처음 文官의 重試와 같이 관료들을 승급시키기 위해 10년에 한 차례 보던 시험을 영조년간 武科에까지 적용시키면서 확대된 결과였다.⁹³⁾ 게다가 영조대

88) 『大典通編』 「兵典」 京官職.

89) 『大典通編』 「兵典」 外官職.

90) 『大典通編』 「兵典」 外官職.

91) 『大典通編』 「兵典」 試取, 賓廳講.

92) 『大典通編』 「兵典」 試取, 專經殿講.

에는 文武관료들에게 試射를 치르도록 제도화하였는데,⁹⁴⁾ 실제 정조년간에 가장 잘 준행되었다. 이외에도 정조대를 전후하여 『武藝圖譜通志』 등 각종 武藝書를 편찬하여 보급하는 데도 상당한 성과를 내었다.⁹⁵⁾

아울러 국왕의 신변강화조치도 주요 특징이다. 영조 후반부터 취해진 조치들을 비롯하여 宣傳官廳, 守門將廳 등 새로운 관제들이 정리되었다.⁹⁶⁾ 宣傳官廳과 守門將廳은 기존의 관리들을 별개의 소속 관청을 중심으로 국왕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한 사례로 보인다. 전자는 왕명을 직접 병조에 전달하는 곳이고, 후자는 도성 및 궁궐 수비의 보루로서 국왕의 병권장악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었다. 그래서 궁궐문을 열고 닫는 것을 보류할 때에는 승정원에서 임금에게 표신을 청해야 했으며, 표신을 내리는 것을 기다려 출입해야 했다.⁹⁷⁾ 이는 정조 즉위 후 犯關사건을 기화로 逆謀를 다스렸는데, 이후 궁궐 각 문에 宿衛를 배치하고 宿衛대장이 궁궐을 수비하도록 하였다.⁹⁸⁾ 이후 門開閉는 주요한 정국현안이 되었고, 정조 2년(1778) 都城의 四大門을 열고 닫는 것에 대한 논의에서도 확인되는 사례이다.⁹⁹⁾ 『경국대전』에서도 이미 정해진 시간 외에 도성문을 열 때에는 開門左符를 내려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¹⁰⁰⁾ 실제 정조 6년(1782)에는 將臣의 도성출입 절차를 재조정하였다.¹⁰¹⁾

別抄軍은 50인을 정원으로 하되 임금이 거동할 때 都城 안이면 輦의 좌우를 시위하고 밖이면 駕後禁軍과 함께 前後를 나누어서 侍衛하며, 騎馬兵

93) 『續大典』 「兵典」 試取, 重試.

94) 『續大典』 「兵典」 試取, 文臣堂下官; 『續大典』 「兵典」 試取, 武臣堂上官; 『續大典』 「兵典」 試取, 武臣堂下官; 『續大典』 「兵典」 試取, 各營將官.

95) 정조 14년(1790) 『御製武藝圖譜通志』가 편찬되었으며, 순조 10년에는 『무과총요』가 편찬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 참조. 나영일, 『정조시대의 무예』,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나영일 외, 『조선 중기 무예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나영일, 『무과총요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96) 『大典通編』 「兵典」 京官職, 宣傳官廳; 『大典通編』 「兵典」 京官職, 守門將廳.

97) 『大典通編』 「兵典」 門開閉.

98) 『正祖實錄』 卷4, 正祖 元年 8月 甲辰(11日).

99) 『正祖實錄』 卷4, 正祖 元年 11月 己卯(17日); 『正祖實錄』 卷6, 正祖 2年 10月 甲申(28日).

100) 『經國大典』 「兵典」 門開閉.

101) 『正祖實錄』 卷13, 正祖 6年 6月 戊寅(13日).

1초를 선발하여 攔後別隊를 만들어 장수로 하여금 前後를 나누어 통솔하였다.¹⁰²⁾ 또 將臣은 감히 令箭으로는 畿內 군대를 지휘할 수 없도록 하고, 임금이 거동할 때 노상에서 表신이 없으면 시위행렬 내로 출입할 수 없었으며, 문관이 겸하는 宣傳官은 비록 實職이 있더라도 侍衛에 나아가도록 하였다.¹⁰³⁾ 임금이 유숙하는 陵幸과 因山 및 遷陵時에는 각 道의 감사는 道의 경계상에서 대기해야 했다.¹⁰⁴⁾

임금이 都城을 비울 때에는 병조에서 守宮大將을 임금에게 천거하여 임명하면 畿內에 숙직하게 하며, 대장은 종사관 1인을 임금에게 천거하여 임명하도록 해서 문관 시종이 궁궐 담장 안을 순찰하고, 또 대신 1인과 현직 혹은 전직 중에서 選任 三軍門 대장 1인이 도성에 남아서 지키며, 대신은 호위군관을 거느리고 結陣하고, 수어청과 총융청 兩營에서는 윤번으로 弘化門 밖에 머물러서 진을 치도록 하였다.¹⁰⁵⁾ 이는 『經國大典』에서 “임금이 나가있을 경우 內陣의 군사에 대해서는 도총관이, 外陣의 군사는 대장이 각기 수표를 하고 밀봉하여 바친다”는 규정을 보완한 것으로서, 실제 정조 2년(1778) 능행시 취해진 조치였다.¹⁰⁶⁾

그리고 임금이 도성 밖에서 숙박하면서 능행할 때에 성문을 닫을 시각에 열도록 하자면 반드시 信箭과 標信이 함께 도착한 후 大妃의 表신(慈旨)과 符驗을 신청하여 받아야만 開門이 허용되었다.¹⁰⁷⁾ 이것도 능행으로 인한 도성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정조 2년 능행시 禁衛大將 洪國榮에 의해서 제안되어 채택된 사안이었다.¹⁰⁸⁾ 아울러 정조 9년(1785)에는 능행시 출궁·환궁할 때 남은 군사들이 나와 전송하는 것을 법식으로 만들었다.¹⁰⁹⁾

102) 『大典通編』 「兵典」 侍衛.

103) 『大典通編』 「兵典」 侍衛.

104) 『大典通編』 「兵典」 雜令.

105) 『大典通編』 「兵典」 入直.

106) 『經國大典』 「兵典」 啓省記: 『正祖實錄』 卷5, 正祖 2年 3月 辛未(11日).

107) 『大典通編』 「兵典」 門開閉.

108) 『正祖實錄』 卷6, 正祖 2年 9月 辛卯(5日).

109) 『正祖實錄』 卷19, 正祖 9年 2月 丙戌(6日).

아울러 三政丞·左右捕將·三軍門 大將·兵曹判書·兼兵曹判書 등에게는 命召를 나누어주고 機密에 속한 일로 임금이 밤중에 부르게 되면 이를 맞추어보고 사용하였으며, 또한 觀察使·統制使·守禦使·總戎使·兩都 留守·節度使·防禦使 등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들에게는 密符를 나누어 주고, 유사시에 符節이 일치하면 임금의 諭書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였고, 그래서 장수에게 준 密符와 命召는 비록 죄를 지어 왕명을 기다릴 때라도 관직이 교체되어 그것을 빼앗기기 전에는 감히 제멋대로 납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¹¹⁰⁾ 이 모두가 국왕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4. 맺 음 말

조선후기 정조대 편찬된 법전 『대전통편』의 전반적인 지향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미처 주목받지 못하였다. 『대전통편』은 이전 시기 법전편찬 과정과는 판이하게 다른 특징을 지녔다. 먼저, 선왕들의 법제정비보다 훨씬 신속하게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숙종년간 환국의 다발로 집권 붕당이 교체될 때마다 법제정비사업이 전면 중지되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영조년간에도 국왕의 법제정비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무를 추진하던 신료들은 쉽사리 동참하지 못하고 시작과 중단을 반복해야 했다. 그렇기에 정조 전반기 법전의 간행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이전 시기까지 법제정비의 주안점은 단연코 「형전」이었다. 그런데 유독 『대전통편』에서만 「병전」의 비중이 가장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무언가 새로운 변수가 법제정비에 직접적으로 간여하지 않고서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는 이제까지 미약한 왕권으로 출발

110) 『大典通編』 「兵典」 符信.

한 정조 초반의 이미지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성과들이었다. 그래서 법전의 편찬시기의 정치지형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조는 집권 초반부터 적극적인 능행과 그에 수반하는 군사훈련을 대규모로 단행하였다. 또한 이 시기 다수의 신료들이 거국적인 武備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새로운 분위기는 정조년간 단행된 법제정비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그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국왕주도의 병제개편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전까지 「형전」 우위의 법제정비사업의 흐름을 「병전」으로 바꾸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조선후기 법제정비의 근간은 이미 영조대 편찬된 『속대전』을 통해서 관찰된 상태였다. 「병전」에 대해서도 5군영의 신설 등 주요한 골격들은 영조년간 개정이 완료되었다. 그런데도 유독 정조년간 六典 중 「병전」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최고 결정권자인 국왕의 관심이 컸기 때문이었다. 주요 내용도 새로운 제도의 신설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일정한 방향으로 수정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왕권 강화였다.

여기에는 군 인사권의 문제가 가장 긴밀히 연관되었다. 그래서 武臣을 등용하는 試取에 관한 항목이 가장 많이 개정 및 보완되었다. 특히, 17세기 이래 유행한 觀武才와 試射를 통한 국왕의 적극적인 文武臣에 대한 선발권 장악과 재교육이 「병전」에 수록된 점이 인상적이다. 아직 정조 중반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던 壯勇營이 완성되지 못하여 이러한 성과도 제대로 수록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先王들의 武備강화 노력을 비롯하여 정조 당대 병제개편 내용에 이르기까지 戎政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수록하면서 한결같이 국왕의 권위 회복과 군주주도의 융정으로 그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또한 국왕에 대한 宿衛문제와 궁궐방위와 관련된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도 개정작업이 진행되었다.

결국 정조년간 대두한 武備강화 요구들은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戎政의 정비를 가능하도록 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이는 사실 국왕의 권력이 반석 위에 올랐을 때 추진 가능한 정책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결국

『대전통편』 「병전」의 편찬으로 귀결된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투고일 : 2010. 6. 29, 심사수정일 : 2010. 7. 16, 게재확정일 : 2010. 7. 27)

주제어 : 법제정비사업, 《續大典》, 《大典通編》, 〈兵典〉, 試射, 觀武才, 英祖, 正祖, 王權, 武備

<ABSTRACT>

A Nature of Publication of *Daejeontongpyeon*,
Military Code in the Reign of King *Jeongjo*,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Kim, Paek-chol

Daejeontongpyeon was at first intended by King *Jeongjo* to become the following installment to *Sugyojibrok*, yet during the compilation process the nature of the task was changed, and the end result was an elevation from its previously expected status, and to a grand law code such as *Gyeonggukdaejeon* or *Sokdaejeon*. This kind of shift in nature led to the most notable characteristic of *Daejeontongpyeon*, the fact that two separate grand law codes coexisting inside. We can see that all the legal codes & clauses created during King *Jeongjo's* reign were granted with the status of the grand law code, and such efforts culminated in the compilation of the *Daejeontongpyeon*.

What's more, King *Jeongjo* made royal trips frequently and implemented a grand scale military train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many officials requested renewed understanding about armaments, and this was led to the publication of *Daejeontongpyeon*. The key part of this law was the king led reformation of military programs. The systems, in which civil and military servants are selected and re-educated directly by the King through *Gwanmujae* (martial exam) and *Sisa* (archery tests), were the evident sign of the maximized sovereign power. This eventually contributed to the compilation of the military code of *Daejeontongpyeon*.

Key Words : Updating and Improving Legal Codes, *Sokdaejeon*,
Daejeontongpyeon, the Military Code, Sisa(archery tests),
Gwanmujae(martial exam), King Yeongjo, King *Jeongjo*, King's
Power, Armaments

